

#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39,120,962	97,173,629
일반회계	2,834,682,135	85,040,464
특별회계	404,438,827	12,133,165
공기업특별회계	328,755,843	9,862,67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6,504,277	4,695,12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2,251,566	5,167,547
기타특별회계	75,682,984	2,270,490
교통사업 특별회계	34,997,663	1,049,93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17,573	36,527
대지보상 특별회계	600,000	18,000
수질개선 특별회계	12,494,125	374,82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624,022	108,721
균형발전특별회계	20,066,860	602,0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645,000	79,350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37,741	1,1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443,01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